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361,993,714 | 10,859,811 |
| 일반회계 | 272,607,400 | 8,178,222 |
| 특별회계 | 89,386,314 | 2,681,589 |
| 공기업특별회계 | 3,477,090 | 104,313 |
|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| 3,477,090 | 104,313 |
| 기타특별회계 | 85,909,224 | 2,577,277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2,353,559 | 370,607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608,554 | 18,257 |
|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| 42,617,316 | 1,278,519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| 8,059,608 | 241,788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3,223,000 | 96,690 |
|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| 1,675,000 | 50,250 |
|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| 8,508,719 | 255,262 |
|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| 943,468 | 28,304 |
|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| 7,920,000 | 237,60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789,50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